

주요내용 변경 대비표

- 펀드명 : KB 삼성&현대차그룹 플러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)

- 변경 내용 : 펀드명 변경, 모펀드 추가, 모펀드 투자비중 변경, 보수인하, 환매수수료 삭제 및 운용역 변경 등

구분	변경전	변경후
펀드명	KB 삼성&현대차그룹 플러스 증권 자투자신탁 (주식)	KB <u>한국 대표그룹주</u> 플러스 증권 자투자신탁 <u>제2호</u> (주식)
신탁계약서	<p>제2조(용어의 정의)</p> <p>9. "모투자신탁"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.</p> <p>가. KB 삼성&현대차그룹 플러스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)</p>	<p>제2조(용어의 정의)</p> <p>9. "모투자신탁"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.</p> <p>가. KB 삼성&현대차그룹 플러스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)</p> <p>(추가)나. KB <u>한국 대표그룹주</u>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)</p>
	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</p> <p>①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 및 모자형의 자투자신탁으로서, 투자신탁의 명칭은 "삼성&현대차그룹 플러스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)"으로 한다.</p>	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</p> <p>①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 및 모자형의 자투자신탁으로서, 투자신탁의 명칭은 "KB <u>한국 대표그룹주</u> 플러스 증권 자투자신탁 <u>제2호</u>(주식)"으로 한다.</p>
	<p>제16조(투자목적)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KB 삼성&현대차그룹 플러스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)의 집합투자증권을 법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6조(투자목적)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에 <u>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을</u> 법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p>
	<p>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<p>1. 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%이상으로 한다.</p> <p>2. 유동성자산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이하로 한다.</p>	<p>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<p>1. 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<u>80%</u>이상으로 한다.</p> <p>2. 유동성자산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<u>20%</u>이하로 한다.</p>
	<p>제39조(보수)</p> <p>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집합투자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 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</p>	<p>제39조(보수)</p> <p>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집합투자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 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</p>

	<p>는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 A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7.15 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7.0 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0.3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0.15</p> <p>2. A-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7.15 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3.5 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0.3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0.15</p> <p>3. ~ 7. (생략)</p> <p>8. C-F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7.15 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0.4 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0.3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0.15</p> <p>9. S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7.15 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3.5 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0.3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0.15</p> <p>제41조(환매수수료) ② 환매수수료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 1. 90일 미만 이익금의 70%</p>	<p>는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<u>다만, 아래 다목의 신탁업자보수는 제2조 제9호에 따른 모투자신탁의 평균 투자비율에 따라 해당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와 배분한다.</u></p> <p>1. A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7.15 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<u>6.5</u> 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0.3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0.15</p> <p>2. A-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7.15 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<u>3.25</u> 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0.3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0.15</p> <p>3. ~ 7. (좌동)</p> <p>8. C-F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7.15 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<u>0.3</u> 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0.3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0.15</p> <p>9. S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7.15 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<u>3.0</u> 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,000분의 0.3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0.15</p> <p>제41조(환매수수료) ② 환매수수료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 1. <u>최초설정일로부터 2019년 05월 08일까지 환매청구 하는 경우</u> 가. 90일 미만 이익금의 70% 2. <u>2019년 05월 09일부터 환매청구 하는 경우:</u> <u>해당사항 없음</u></p>
투자설명서	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. 운용전문인력 현황 - 책임: 윤동환 / 부책임: 이명우	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. 운용전문인력 현황 - <u>책임: 심효섭</u>
※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※ 투자설명서 변경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변경		

- 변경(예정)일 : 2019년 05월 08일